

2026년도 제2차

---

# 임시총회 회의자료

2026년 6월 12일(금) 오후12시00분

삼보정 (보은읍 삼산로4길 8 )

 SSN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

# 회 순

1. 개 회
2. 국 민 의 례
3. 성 원 보 고
4. 회 장 인 사
5. 전 차 회 의 록 처 리
6. 감 사 보 고
7. 부 의(안) 심 의
8. 폐 회

# ||| 목 차 |||

■ 전차회의록 처리 .....	00
○ 전차회의록 .....	00
■ 부의(안)심의 .....	00
○ 제1호 의안 : 법인 정관변경 개정(안) .....	00
○ 제2호 의안 : 법인 제규정에 관한 사항 .....	00

1.

## 전 차 회 의 록 처 리

---

- ◎ 전차회의록

회 장



2026년도

---

#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

2026. 4. 16.

 SSN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

# 2026년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

1. 개최일시 : 2026년 4월 16일(목) 오후12:00
2. 개최장소 : 시골막국수 & 바다향코다리조림 (보은읍 장신로11)
3. 총 회원 수 : 31명
4. 참석회원 : 26명
  - 출석회원 : 20명
  - 위임회원 : 6명

## 5. 안건상정

구왕회 의장이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1차 임시총회 회의 안건을 상정하다.

- 제1호 : 법인 정관 변경(안)

## 6. 개회 및 성원보고

### 가. 개회선언

구왕회 의장은 재적회원 31명중 26명이 참석 (위임 6명)하여 정관규정 제28조 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제1차 임시총회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.

### 나. 국민의례

### 다. 의장인사

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.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,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## 7. 전차회의록 처리

- 구왕회 의장 : 김재훈 사무국장은 전차회의록을 보고해 달라.
- 구왕회 의장의 명을 받아 김재훈 사무국장이 전차회의록을 보고하다.
- 구왕회 의장 : 이사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는지 질문하고 원안대로 받기를 요청하다.
- 정화영 이사 : 동의한다.
- 김정식 이사 : 재청한다.
- 구왕회 의장 : 참석회원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.

## 8. 부의안 심의

### 가. 제1호 의안 법인 정관 변경(안)

구왕회 의장이 제1호 의안 정관 변경(안)을 심의하고 김재훈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- 김재훈 사무국장 : 제1호 의안 정관 변경(안)에 대해 설명하다.
- 구왕회 의장 : 본 법인 정관 제4조 (사업)에서 법인의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목적사업 변경이 필요하기에 위원님들의 승인이 필요하다.
- 구왕회 의장 : 위의 사항에 대해 심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.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는지 질문하고 원안대로 받기를 요청하다.
- 박환신 이사 : 동의한다.
- 이창희 이사 : 재청한다.
- 정화영 이사 :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가 보은군의 위탁 사업들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복지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해야 한다.
- 구왕회 의장 : 참석 위원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법인 정관 변경(안)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.

## 9. 기타 (보고사항)

- 구왕회 의장 : 지난 1월에 임원등기 변경으로 등기수수료가 지출된 관계로 이번 정관 변경에 등기수수료가 없어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하려고한다.

10. 폐회

기타 다른 의견 없이 참석회원 전원이 이의 없음을 밝히자 구왕회 의장은 회의록 서명자로 참석하신 이사님 및 감사님 모두에게 인감 날인을 부탁하였다.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며, 12시30분에 2026년도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제1차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한다.

2026년 4월 16일

사회복지법인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

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07

의 장 구 왕 회 (서명, 인)

이 사 정 화 영 (서명, 인)

이 사 김 정 식 (서명, 인)

이 사 홍 성 관 (서명, 인)

이 사 민 혜 정 (서명, 인)

이 사 김 동 수 (서명, 인)

이 사 이 창 희 (서명, 인)

이 사 조 명 희 (서명, 인)

감 사 황 종 학 (서명, 인)

감 사 우 병 기 (서명, 인)

기 록 자 사 무 국 장 김 재 훈 (서명, 인)

확 인 자 사 무 국 장 김 재 훈 (서명, 인)

2.

## 부 의 안 심 의

---

- 제1호 의안 : 법인 정관변경 개정(안)
- 제2호 의안 : 법인 제규정에 관한 사항

<b>의안번호</b>	제 1 호	<b>의 결 사 항</b>
<b>의 결 년 월 일</b>	2026년도 제2차 임시총회 2026. 6. 12.	

**법인 정관변경 개정(안)**

<b>제 출 자</b>	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회 장 구 왕 회
<b>제출년월일</b>	2026. 6. 12.

---

## 1. 의결주문

-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25조, 제49조에 의거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정관변경(안)을 원안과 같이 심의·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3. 관련근거

- 정관

제25조(총회 의결사항)

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제49조(정관변경)
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

## 4. 주요골자

- 제4조 (사업) 일부
  - 제25조 (총회 의결사항) 일부
  - 제32조 (이사회 의결사항) 일부
-

#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정관 개정(안)

規 정 관	개 정 (안)	변경사유
<p><b>제4조(사업)</b>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·계획 수립</li> <li>2.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·훈련</li> <li>3.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</li> <li>4.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</li> <li>5.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</li> <li>6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<u>안내센터 설치운영</u></li> <li>7.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<u>직질향상과 복리증진</u></li> <li>8.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</li> <li>9. 회원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 및 협의</li> <li>10. 복지서비스관련 실무자 및 서비스 자원인력 교육</li> <li>11.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사업</li> <li>12. 지역복지서비스간 매개를 촉진하는 연계망 구성</li> <li>13.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 사업의 진흥</li> <li>14. 지역사회복지지원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한 협의 및 건의</li> <li>15. 복지위원 및 사회복지관계 위원 등의 육성 및 연락</li> <li>16. 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위탁업무</li> <li>17.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원</li> <li>18.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사업</li> <li>19.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필요사항 추진</li> </ol>	<p><b>제4조(사업)</b>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&lt;개정 2026. . . 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2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3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4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5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6. <u>자원봉사활동의 진흥 &lt;개정 2026. . . &gt;</u></li> <li>7.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<u>교육훈련과 복리증진 &lt;개정 2026. . . &gt;</u></li> <li>8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9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10. 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협력·조정 &lt;개정 2026. . . &gt;</li> <li>11. 사회복지 사회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지원 기의 연계 협력 &lt;개정 2026. . . &gt;</li> <li>12.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&lt;개정 2026. . . &gt;</li> <li>13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14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15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16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17. &lt;삭제 2026. . . &gt;</li> <li>18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19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/ol>	<p>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(사회복지협의회)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(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) 준용</p>

별 정관	개정(안)	변경 사유
<p>제25조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해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회비 및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</li> <li>9.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</li> <li>10.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의한 사항</li> </ol> <p>제32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&lt;삭제&gt;</li> <li>3. &lt;삭제&gt;</li> <li>4. 제구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&lt;삭제&gt;</li> <li>6. &lt;삭제&gt;</li> <li>7.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</li> <li>8.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9. &lt;삭제&gt;</li> <li>10.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</li> <li>11.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의한 사항</li> </ol>	<p>제25조(총회 의결사항)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2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3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4.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구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&lt;개정 2026. . . &gt;</li> <li>5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6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7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8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9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10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/ol> <p>제32조(이사회 의결사항)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현행과 같음&gt;</li> <li>2.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&lt;개정 2026. . . &gt;</li> <li>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&lt;개정 2026. . . &gt;</li> <li>4. 법인의 합병·해산에 관한 사항&lt;개정 2026. . . &gt;</li> <li>5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&lt;개정 2026. . . &gt;</li> <li>6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&lt;개정 2026. . . &gt;</li> <li>7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&lt;개정 2026. . . &gt;</li> <li>8. &lt;삭제 2026. . . &gt;</li> <li>9. &lt;삭제 2026. . . &gt;</li> <li>10. &lt;삭제 2026. . . &gt;</li> <li>11. &lt;삭제 2026. . . &gt;</li> </ol>	<p>사회복지법인 권리 안내 이사회 의 기능(공익법인법 제7조) 준용</p>

<b>의안번호</b>	제 2 호	<b>의 결 사 항</b>
<b>의 결 년 월 일</b>	2026년도 제2차 임시총회 2026. 6. 12.	

**법인 제규정에 관한 사항**

<b>제 출 자</b>	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회 장 구 왕 회
<b>제출년월일</b>	2026. 6. 12.

---

## 1. 의결주문

-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제규정(안)을 원안과 같이 심의·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과 회원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, 개정된 정관의 취지에 맞는 제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관련근거

- 정관

제25조(총회 의결사항)

- 4.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## 4. 주요골자

-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정비
  -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정비
  - 기타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
-